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41조 [운전위치의 이탈금지]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41조(운전위치의 이탈금지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1. 양중기
2. 항타기 또는 항발기(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)
3. 양화장치(화물을 적재한 상태)

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.

그림은 안전한 위치에서의 설명 예시입니다. 운전 중 이탈 허용이나 정지·종료 절차를 새로 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30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41조 [운전위치의 이탈금지]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41조(운전위치의 이탈금지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1. 양중기
2. 항타기 또는 항발기(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)
3. 양화장치(화물을 적재한 상태)

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.

그림은 안전한 위치에서의 설명 예시입니다. 운전 중 이탈 허용이나 정지·종료 절차를 새로 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30.